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8. 18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4. 검 토 의 건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3년 8월 27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이 총 일

대전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본 안건은 2003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8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과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기
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·시설·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, 입지, 자금지원
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정상분양가격 이하로 공급
및 장기저가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4조)
- 다.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
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이전보조금 지원 및
본사이전시 3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
이내의 이전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(안 제5조)
- 라. 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
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
시설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(안 제6조)

- 마. 기업이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이전하여 6월 이상 관할구역안에 거주한 자를 30명 이상을 초과하여 신규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(안 제7조)
- 바.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 6월 이상 관할구역안에 거주한자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, 기업당 2억원이내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(안 제8조)
- 사. 공장시설 이전보조금, 시설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·사업서비스업 및 영화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,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설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함(안 제9조)
- 아. 이전기업의 지방세감면, 공유재산지원, 기업지원자금의 우대지원 사항을 명시함(안 제10조 내지 제12조)
- 자.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- 차.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(안 제14조)
- 타.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기획단 설치운영 근거를 정함(안 제15조 내지 제20조)
- 파.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(안 제22조)

3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우리시에 많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·시설·고용·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
-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안 제4조에서 지역기업이나 외지기업이 공장시설을 산업단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정상분양 가격 이하의 저가로 공급하거나 또는 장기 저가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안 제5조에서 외지기업이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의하여 2억원 이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안 제6조에서 지역기업과 외지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2항·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2억원 이내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안 제7조에서 지역기업과 외지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1인당 30만원 이하로 2억원 이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안 제8조에서 지역기업과 외지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제1항·제2항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1인당 30만원 이하로 2억원 이내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안 제9조 제1항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·영화산업으로 총괄적으로 정하면서, 제2항·제3항에서 안 제7조의 고용보조금·안 제8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음

- 그리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서 지방세 감면규정, 공유재산 지원 규정,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,
- 특히 안 제13조에서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과 안 제14조에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외지기업 이전시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우대 지원규정을 정하고 있음
- 아울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안 제15조에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하고, 안 제16조 내지 안 제 21조, 안 제 23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22조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
-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기업유치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국 대도시에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, 타 도시와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안 축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
- 그러나 동 조례안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요구되며
- 안 제4조에서 지역기업과 외지기업이 공장시설을 산업단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정상 분양가격 이하의 저가로 공급 또는 장기 저가로 대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

- 이에 대한 공장시설의 신설·증설·이전의 규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, 산업용지를 정상 분양가격 이하의 저가로 공급 또는 장기 저가로 대부 할 수 있는 유치기업 선정시 논란의 소지가 있고,
- 정상적으로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를 분양가격 이하의 저가로 공급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 규칙 제정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